

#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30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2년 10월 17일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## 1. 제안이유

노인, 장애인 등 특정 계층과 저소득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,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조문 현행화(안 제1조 및 제8조)

나. 사회복지기금 존속기한 연장 및 예외 조항 신설(안 제3조의2)

- 사회복지기금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
- 자활계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7에 따른 법정 기금이므로, 존속기한 미적용 조항 신설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(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)

다. 기타

(1) 입법예고 (2022. 9. 8. ~ 9. 28.) 결과 : 의견없음

(2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18조의3”을 “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18조의7”로 한다.

제3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 본문 중 “2022년 12월 31일”을 “2027년 12월 31일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자활계정은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18조의7을 따른다.

제8조제2항제5호 중 “법 제18조의2”를 “법 제18조의6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,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5조 및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18조의3에 따라 노인, 장애인 등 특정계층과 저소득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을 설치 및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3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 기금의 존속기한은 <u>2022년 12월 31일</u>까지로 한다. 다만,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기금의 보존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제8조(자활계정) ① (생 략)                  ② 자활계정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.                  1. ~ 4. (생 략)                  5. <u>법 제18조의2</u>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                 6. ~ 14. (생 략)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----- 「<u>국민기초생활 보장법</u>」 제18조의7-----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-----.</p> <p>제3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 ① ----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----- <u>2027년 12월 31일</u>-----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-----.</p> <p>② <u>자활계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7을 따른다.</u></p> <p>제8조(자활계정) ①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② -----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1. ~ 4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5. <u>법 제18조의6</u>-----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6. ~ 14. (현행과 같음)</p>

#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 1. 비용발생 요인 - 해당없음

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(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지 표시)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해당

#### 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① 의원·위원회·시장·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### 3. 미첨부 사유

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당초 “2022년 12월 31일”에서 “2027년 12월 31일”로 연장하고,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현행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비용 증가가 예상되는 사항이 아님

### 4. 작성자 : 복지정책과 김미진 (2133-7317)